

2026학년도

마이폴학교 학칙 변경안



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

2026년 4월 19일

목 차

제 1 장 총칙	1
제 2 장 교육 조직	1
제 3 장 수업연한, 학기 및 휴업일	1
제 4 장 학급 편제, 학생정원	2
제 5 장 입학, 재입학, 자퇴, 휴학, 퇴학원	2
제 6 장 수업일수, 수업, 출결, 체험학습, 졸업기준, 취학의무유예	3
제 7 장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및 학교 안전	5
제 8 장 학생의 학교생활 및 선도위원회	6
제 9 장 학생자치활동 및 생활관 운영	7
제 10 장 학생의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	7
제 11 장 운영위원회 및 각 종 위원회	8
제 12 장 학칙 개정	9
제 13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학습권보호	9
제 14 장 학업중단예방 및 학생 위기관리	9
부 칙	10

제 1 장 총 칙

제1조 [목적] 이 학칙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라 본 대안교육기관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명칭] 본 교육기관은 “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”라 칭한다.

제3조 [위치] 본 교육기관은 충청북도 청천면 도원통미길 12-11에 위치한다.

제4조 [교육목적] 본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, 이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개별교육과정과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 분야를 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고, 이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들을 길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 2 장 교육 조직

제5조 [교육 조직] 학교 구성원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① 교장

교장은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고, 교직원의 관리 감독을 총괄한다.

② 교감

교감은(이하 "교감"이라 한다) 학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학교장의 임무를 받아서 학교 사무와 교육과정을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의 근태 및 근무를 조율하고 지도 감독한다.

③ 교사

교사는 각 연구실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, 진학진로, 생활을 상담, 지도, 관리하며, 학생 관심 분야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연구활동을 지원한다.

④ 직원

직원은 교목, 행정실장 및 행정실 사무원, 대외협력실장, 시설팀장 및 시설팀 직원, 생활관장 및 사감, 영양사 및 급식조리원, 미화직원으로 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수업연한, 학기 및 휴업일

제6조 [수업연한] 본 교육기관은 무학년제로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 기간을 2년으로 하며, 본교의 졸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.

제7조 [학기]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며, 두 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이며,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.

제8조 [휴업일] 본 교육기관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80일 이상의 수업 일을 유지하면서 학교장이 재량 휴업일을 정하며, 천재지변이나 학교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180일 내에서도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학급 편제, 학생 정원

제9조 [학급 편제]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10개로 하며, 입학생의 특성과 진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 [학생 정원] 본 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은 15명으로 한다. 전체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.

제 5 장 입학, 재입학, 자퇴, 휴학, 퇴학원

제11조 [입학]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으로 학교의 이념과 규칙을 따라 재학기간동안 학생의 본분을 유지한다는 서약자에 한하여 선발한다.

- ①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 및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고 모집 시 공고한다.
-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, 입학시 발전기금 및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 [재입학]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재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3조 [자퇴]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의 연서로써 자퇴서를 자퇴 전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 [휴학] 본교는 원칙적으로 휴학 제도가 없다. 다만, 질병과 부상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승인으로 휴학할 수 있다.

- ① 휴학하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의 연서로써 자퇴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학교장의 휴학 승인을 받은 경우 휴학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할 수 있으며,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. 단 사정에 따라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그 복학 시기를 단축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이 승인한 휴학 기간 중에는 수업료, 식대 및 기숙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④ 학교장 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자퇴서를 내고 추후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 신규 입학과 동일하게 지원과 면접을 거쳐 합격 시 입학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입학 시 발전기금을 징수함.

제15조 [퇴학]

- ①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외출이나 귀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시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한다.
- ②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 또는 퇴학 조치 할 수 있다.
 1.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리고 학교장의 승인없이 계속하여 60일(주말 제외) 이상 결석한 학생
 2. 학교의 명예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학교 내외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

제 6 장 수업일수 및 수업, 수료 및 졸업사정

제16조 [수업일수] 본 교육기관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.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규정 시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7조 [수업]
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본 학교의 수업은 무학년, 무강의,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기에 수업의 진행 및 운영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 탐구를 원칙으로 하며, 지도 학생과 내용의 특성상 담당 교사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주 3시간 범위 안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.
- ③ 수업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학생을 학습, 생활, 진학진로에 관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④ 수업은 다양한 기기(예, 노트북, 태블릿 PC, 등)와 매체(예, AI, YouTube, Mooc, Cousera, Udemy, Kocw 등)를 이용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로 운영한다.
- ⑤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 관심 개발을 위하여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.

제18조 [출결처리]

- ①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 1. 천재지변, 법정전염병 등
 2.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
 3.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 4. 경조사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
 5. 기타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하는 결석
- ③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의 처리 기준은 각 호와 같다.
 1.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는 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.
 2. 병결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(진단서)를 제출해야 한다.
 - 1) 수술과 입원에 의한 병가
 - 2) 기타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병가

④ 외출

1. 기숙학교의 특성 상 일요일이나 학교가 허락한 정해진 시간에 한하여 외출이 허락될 수 있다. 이 경우 외출신청서를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9조 [교외체험학습]

학생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학교장이 연간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) 교외체험학습은 학기당 20일 이내로 한다.
 - 2) 교환·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.
 - 3)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할 수 있다.
- ②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3일 전까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될 수 있다. 단, 긴급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시행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 [졸업사정]

- ① 본 학교가 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.
- ② 졸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1. 매 학기 모든 과목에서 PASS
 - 1) FAIL을 받은 학생은 졸업 전에 해당 과목을 다시 도전해서 PASS를 받을 수 있음
 - 2) 졸업 시 FAIL이 있는 경우 졸업 전 FAIL 사유를 해소 시 PASS로 졸업 가능
 2. 마이폴역량 인증서 획득
 - 1) 졸업 전에 10개의 마이폴 역량에 대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역량인증서 발급 (인증위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통과)
 - 2)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생이 졸업신청서를 담임과 함께 작성하여 신청
 3. 고졸검정고시 합격
 - 1) 대체 가능 조건 : GED (미국검정고시) 합격
 4. 2년 의무 재학 기간 (2-year Residence Requirement)
마이폴의 교육이념을 체득하고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와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재학 기간

제21조 [취학 의무 유예]

- ① 본 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 예정 학생은 법 및 영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13조의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활동을 지원한다.
- ③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이 본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, 해당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활동을 지원한다.

제 7 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

제22조 [교육과정]

- ① 본 교육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목표와 마이폴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(확대교무회의)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·운영한다.
- ② 본 교육기관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학 학부 진학과 창업을 목표로 하는 융합교육과정과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연구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제23조 [교육과정위원회]

-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(확대교무회의)를 둔다.
-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4조 [학습평가]

- ① 매 학기 학생의 평가는 5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.
평가 영역 : 출석, 수업태도, 학습계획안, 발표, 결과물 제출
- ② 각 교사는 학습자가 성취 과정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, 관리, 조언하고 정기적으로 관찰을 기록한다.
- ③ 자기주도학습평가는 학기 중 연구실과 자기주도학습 시간 중에 이루어지며, 지도교사는 학습자의 발전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기록한다.

제25조 [학교 안전]

- ① 본 교육기관은 학생 안전 교육을 매년 실시하며, 학교 안에 학교안전수칙을 둔다. [별표1]
- ② 마이폴학교 안전 수칙에 따라 월 1회의 정기적인 시설 및 안전교육 및 검사를 실시한다.
- ③ 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공제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.

제8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
제26조 [학생포상]

- ①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 말에 포상한다.
- ② 포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7조 [징계]

-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내의 봉사
 2. 사회봉사
 3. 특별교육이수
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 5. 퇴학 처분
- ②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8조 [학생선도위원회]

- ①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징계를 심의한다.
- ② 선도위원회는 교감(교감 부재 시 교장), 학생생활부장, 교무부장, 상담교사, 생활지도교사로 구성한다.
- ③ 선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학교폭력 또는 학생 선도 사안 접수
 2. 보호자 통보
 3. 사안 조사 및 학교장 결과 보고
 4.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
 5.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삭제 심의
 6.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
 7. 학교폭력 경찰 신고
- ④ 선도위원회는 교육상 필요할 때 징계 외의 훈계, 훈육, 벌칙의 형태로 선도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다. 단,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9 장 학생자치활동 및 생활관 운영

제29조 [학생자치활동]

- ① 본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위원회(이하 “학생회”)를 둔다.
- ②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 및 장려하기 위해서 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- ④ 학생회의 임기는 1학기이며,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매 학기 말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.
- ⑤ 학생회 선거는 원칙적으로 경선으로 진행되며, 불가피한 경우 단일후보로 선출하며,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가 반 대표 중에 학생회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. 선출된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함께 일할 학생회 임원을 임명한다.
- ⑥ 학생회 임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생 본분에 어긋난 언행으로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학생회 임원직에서 면직된다.

제30조 [생활관 운영]

- ① 본교는 자기주도적 생활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.
- ② 생활관의 생활지도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기숙사 내부 규율 관리를 위해서 생활관장의 지도하에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.

제 10 장 학생의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

제31조 [수업료·입학금 및 운영지원비,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]

- 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분기 단위로 수업료를 징수한다.
- ② 입학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대안학교 수업료 반환 규정에 따라 잔여 수업료를 환불하며, 입학 시 내는 발전기금은 입학 이후에는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.
- ③ 수업료 금액과 변경 및 수업료 징수 관련 사항은 물가상승률, 임금상승률,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정한다.
- ④ 학교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교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청 대안학교 수업료 반환 규정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을 반환한다.

제32조 [수익자부담경비] 학교장은 수업 이외의 체험학습을 포함한 개별 또는 단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11 장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

제33조 [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]

- ① 본 교육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5명이며, 학교 위원 3명과 학부모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.
-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한다.
-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으로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4조 [각 종 위원회] 학교의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.

- ① 학부모회
 - 1. 학교의 발전과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하여 학부모회를 둔다.
 - 2. 학부모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자치적으로 선출한다.

3. 학부모회가 3월 말까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각 반의 대표 학부모들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에 참석하는 학부모 대표를 두 분을 정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

1. 교원의 채용, 표창, 포상 등의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.
2. 위원회는 교장, 교감, 교무부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입학사정위원회

1.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.
2. 위원회는 학교장, 교감, 교무부장으로 구성한다.

④ 졸업사정위원회

1. 졸업 요건을 심사하고 졸업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.
2. 위원회는 학교장, 교감, 교무부장, 연구부장으로 구성된다.

제12장 학칙 개정

제35조 [학칙 개정]

- ① 학칙은 관계 법령의 개정,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의 개정의견, 또는 학교경영상 필요한 때에 개정할 수 있다.
- ② 학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칙개정위원회를 두며, 교장(위원장), 교감, 교무부장, 학생생활부장을 위원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다.
- ④ 학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된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및 공포한다.

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학습권 보호

제36조 [학교교권보호위원회]

-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
 3.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
 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5. 그 밖에 교권 관련 사항 심의
-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7조 [학습권보호] 본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며, 교원, 학생, 학부모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14장 학업중단예방과 학생위기관리에 관한 사항

제38조 [학업중단예방위원회]

- ① 위원회는 교감, 교무부장, 학생생활부장, 상담교사, 담임을 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학습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을 한다.
- ③ 학업 중단 예방 운영계획 및 예방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
- ④ 학생에 대한 자퇴숙려제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.

제39조 [학생위기관리위원회]

- ① 위원회는 교감, 교무부장, 학생생활부장, 상담교사, 담임을 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한 조치를 협의하고 집행한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업무시행세칙 및 그에 준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25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본 규정은 202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기타]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 학교 안전 규칙 [별표 1]

제1조 [목적] 이 규칙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기반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 이 규칙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의거 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.

제3조 [학생 안전교육]

- ① 학교의 장은 국가가 정한 일반학교의 학교안전교육인 7대 영역의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한다.
- ② 학교의 교직원 등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.

제4조 [교직원 등 안전교육]

-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다만,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이상을 이수한다.
- ②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실시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·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